

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
1. 변경 대상 펀드 : IBK 단기 국공채 공모주 증권 자투자신탁 2호[채권혼합]

(변경전: IBK 공모주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[채권혼합])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 펀드명 변경
- ②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
- ③ 투자대상자산 및 취득한도 (자투자신탁 내용으로 변경)
- ④ 종류 C / 종류 C-e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
 - 종류 C : 연 1000분의 8.00 -> 연 1000분의 6.00
 - 종류 C-e : 연 1000분의 3.90 -> 연 1000분의 3.00

3. 변경 시행일 : 2018년 05월 29일

4. 변경 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 설>	9. "모자형"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3조(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IBK 공모주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[채권혼합]"으로 한다.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~5. (생 략) 6.<신 설> ③(생 략) ④<신 설>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IBK 단기 국공채 공모주 증권 자투자신탁 2호[채권혼합]"으로 한다.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~5. (생 략) 6. 모자형 ③(현행과 같음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IBK 단기 국공채 공모주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혼합]
제16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
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7. (내용 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내용 생략)</p> <p>③~④ (내용 생략)</p>	<p><u>으로 한다.</u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7. <삭 제></p> <p><u>1.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u> <u>2.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~④ <삭 제></p>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<신 설></p> <p>1. ~ 6. (내용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<u>1. 제3조 제4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90%이상으로 한다.</u> <u>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6. <삭 제></p>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 략) 2. ~ 5. (내용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~ 5. <삭 제></p>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</u>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</u>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

	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u></p> <p>②~④ (내용 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u></p> <p>②~④ <삭제></p>
<p>제25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)</p>	<p><신설>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26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</p>	<p><신설>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	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<u>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</u>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	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-----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<u>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-----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7조(수익자총회)</p>	<p>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<u>법령 (또는 신탁계약)에서 정한 사항에</u></p>	<p>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<u>법령 (또는 신탁계약) 및 모투자신탁의</u></p>

	<p><u>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⑩ (생략) ⑪ (신설)</p>	<p><u>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⑩ (현행과 같음) 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
<p>제39조(보수)</p>	<p><u>종류 C 수익증권</u> 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250 나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8.00 다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 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0</p> <p><u>종류 C-e 수익증권</u> 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250 나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3.90 다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 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0</p>	<p><u>종류 C 수익증권</u> 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250 나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6.00 다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 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0</p> <p><u>종류 C-e 수익증권</u> 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250 나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3.00 다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 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0</p>
<p>제39조의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</p>	<p>(신설)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60%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"라 한다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
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	<p>①~③(생략)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-----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①~③(현행과 같음)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<u>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</u>)부터 1월 이내 -----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①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-----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 ③~④(생략) ⑤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-----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-----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~⑩ 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<u>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</u>)을 그 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-----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~④(현행과 같음) ⑤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</u>)를 작성하여 -----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</u>)를 작성하여 -----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~⑩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 칙</p>	<p><신설>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<u>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